### 49. 학교 소속 조리사에서 발생한 뇌경색

성별	여성	나이	만 58세	직종	학교 소속 조리사	직업관련성	-

### 1 개요

근로자 ○○○은 2004년 3월부터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동안 음식조리 및 배식,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4월 급식실에서 오븐기와 주변 바닥 청소를 하던 중 오른쪽 얼굴 마비 증상 시작되었고, 이후 어지러움과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A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약 16년 동안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2020년 3월부터 대청소 작업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2020년 9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월 18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 2 작업환경

근로자 ○○○은 2004년 3월 □학교 급식실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재해 발생일인 2020년 4월 이후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 2022년 8월 정년퇴직하였다. 조리사로 약 16년 근무하는 동안 식자재 검수, 전처리, 음식물 조리, 주방 청소, 배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급식실의 식수 규모는 조식(기숙사) 120인분, 중식 1,200인분, 석식 500~600인분 정도였고, 급식실 근무자는 영양사 1명,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보조원) 12~13명으로 04:30~17:00(조식·중식담당), 08:30~20:30(중식·석식담당) 2개 근무조로 나누어 일주일마다 번갈아 작업하였다.

# 3 해부학적 분류

- 신경계 질환

#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58세가 되던 2020년 4월 급식실에서 오븐기와 주변 바닥 청소를 하던 중오전 10시 15분경 오른쪽 얼굴 마비 증상 시작되었고, 이후 머리 어지러움과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오전 11시 12분경 A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lateral medullary infarction, Rt.)으로 진단받았다(Bain MRI). 현재에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오른쪽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속도가 느리고 말이 어눌한 증상 지속되고 있다. 근로자는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다. 가족력으로 아버지가 위암으로 사망하였으며 기저질환으로 고지질혈증, 고혈압, 고혈당증으로 수진한 이력이 있지만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여, 1962년생)은 만 58세가 되던 2020년 4월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04년 3월에 □학교에 입사하여 약 16년 동안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며 조리업무와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으로 단기부담 및 장시간 근로와 청소시에 발생하는 염소가스, 조리시에 노출될 수 있는 조리흄이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업무와 청소업무 중 조리흄과 염소가스 등에 노출되었다. 문헌검토 결과 이들 물질과 근로자의 뇌경색 발병의 역학적 증거는 부족하다. 이 중 조리업무로 인한 미세먼지 노출과 뇌혈관질환의 연관성을 조 사한 역학연구는 현재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환경적 노출과 뇌혈 관질환의 연관성은 최근 역학적 증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는 점, 조리 시에는 대기 환경으로 인한 노출보다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직업 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된 일부 근로자에서 뇌혈관질환 발병 증가의 연관성을 보고한 전향적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상병에 작업환경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의 근로시간은 주당 37.5시간 으로 인정기준 이하였으나, 질병 발생 1달 전 강도 높은 청소 작업을 하였던 점은 업무 관련성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술한 작업환경요인을 포함하여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끝.